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4709

제출연월일: 2024. 10. . 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적·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산림이용진홍사업 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, 산림이용진홍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시행자의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'정당한 사유'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제2호 중 "1년 이내에"를 "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 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	제39조(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
및 대체지정 등) ① 도지사는	및 대체지정 등) ①
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
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	
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4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	2
획의 승인을 받은 후 <u>1년 이내</u>	<u>정당한 사</u>
<u>에</u>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	<u>유 없이 1년 이내에</u>
지 아니한 경우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